

#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운영

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,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,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

## □ 사업근거

-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
- 「2011 장애인복지 종합시책」 (행정1부시장방침, 2011.5.20)
- 「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 강화 계획」 (시장방침, 2011.11.3)
- 서울특별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제12조

## □ 추진경위

- '06.11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시범사업
- '07. 5월 장애인활동보조 국가사업 전국 시행
- '07. 9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시행
- '11. 7월 장애인활동보조 서울시 추가지원 확대 시행
- '11.10월 장애인활동보조 → 장애인활동지원제도로 변경·확대
- '13. 1월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확대(장애1급 → 장애1~2급)
- '14. 3월 최종증 독거장애인 지원시간 확대(180→200시간)
- '15. 2월 서울시 자체 24시간 지원 시행(100명)
- '15. 6월 장애인활동지원 지원대상 확대(장애1~2급 → 1~3급)
- '16. 5월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사업 시행
- '18.10월 최종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확대 (100명→200명)
- '19.1월 탈시설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(30시간→50시간)

## □ 사업개요

- 지원대상 : 만 6세~65세 미만의 1~3급의 중증장애인 (소득기준 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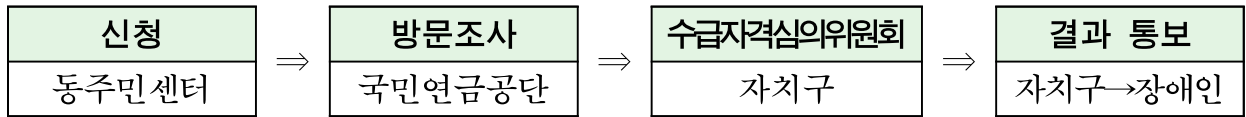
- 국고보조사업 : 1~3급 장애인으로서 '인정조사표'에 의한 조사결과 220점 이상인 자
- 시비추가사업 : 국고보조사업 1등급자 중 외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및 국고지원 탈락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점 이상 220점 미만인 자, 시설 퇴소자

담당자

장애인자립정책팀 최혁수 ☎ 2133-7475

○ '19년 대상인원 : 월17,000명(서울시 추가급여 2,500명 포함)

○ 대상자 선정절차



○ 지원급여 : 등급에 따라 월 50시간~741시간(국고47~391, 시비50~350)

- 기본급여 : 활동지원 등급별 지원
- 추가급여 : 수급자 생활환경에 따라 지원
- 시 추가급여 : 장애1급 중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, 1급 장애인 중 인정점수 200~220점 미만인 자, 시설퇴소 장애인
- 가산급여 : 인정조사점수 440점 이상인 자 등 활동보조인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경우 가산수당 제공

※ '19년 가산수당 : 시간당 1,000원/주간, 1,500원/야간

기본급여(국고보조)			추가급여(국고보조)		서울시 추가급여	
구분	등급	월 급여액(시간)	지원 분류	월 급여액(시간)	지원 분류	월급여액(시간)
장애 1~3급	1등급 (380점~470점)	118시간 (1,529천원)	최중증(400점이상)독거·취약가구	273시간 (3,538천원)	장애1급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로 24시간 지원 선정자	4,536천원 (350시간)
			중증(380~399점)독거·취약가구	80시간 (1,036천원)		
	2등급 (320점~379점)	94시간 (1,218천원)	기타(380점 미만)독거·취약가구	20시간 (259천원)	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	2,592천원 (200시간)
			수급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(6개월)	80시간 (1,037천원)		
	3등급 (260점~319점)	71시간 (920천원)	거주시설 퇴소(6개월), 보호자 일시 부재	20시간 (259천원)	장애1급 중 인정점수가 380점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가구*	1,555천원 (120시간)
			학교에 다니는 경우	10시간 (129천원)		
	4등급 (220점~259점)	47시간 (609천원)	직장에 다니는 경우	40시간 (518천원)	장애1급 (인정점수 200점~219점)	518천원 (40시간)
			400점이상 수급자 가족의 직장생활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경우	72시간 (933천원)		

※ 취약가구 :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~3급 장애인,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

※ 단 독거가구 장애인으로 인정점수 380점 이상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끼리 결혼한 경우 :

당초 독거가구 기준 감액된 급여의 80% 급여제공

※ 인정점수 380점 이상으로 서울시 추가급여 대상자끼리 결혼한 취약가구 : 부부동일하게 서울시 추가급여 제공

○ **활동지원 서비스 내용 및 서비스 단가**

구 분	서비스제공자	서비스 내용	단가(시간, 회)
활동보조	활동보조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신체활동 지원 : 개인위생관리, 신체기능유지 증진, 식사도움, 실내이동 도움</li> <li>■ 가사활동 지원 : 청소, 주변정돈, 세탁, 취사</li> <li>■ 사회활동 지원 : 등하교, 출퇴근 지원, 외출시 동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주간 : 12,960원</li> <li>■ 야간 공휴일 : 19,440원 (22시~익일 06시)</li> </ul>
방문목욕	요양보호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목욕설비를 갖추어 목욕서비스 제공</li> </ul>	65,410원 ~ 72,540원
방문간호	간호사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간호, 진료보조, 영양상담, 구강위생 등</li> </ul>	35,230원 ~ 53,170원

○ **본인부담금(국비) : 소득수준별 차등부과**

- 기초생활수급자 : 본인부담금 면제
- 차상위 계층 : 2만원 정액 부과
- 차상위 초과 계층
  - 기본급여 : 급여액의 6~15%
  - 추가급여 : 급여액의 2~ 5%
- ※ 서울시 추가급여는 본인부담금 면제

○ **사업수행기관**

- 활동지원 기관 및 활동보조인 등록 현황 : 160개소, 16,999명

활동지원 기관(개소)				활동보조 제공인력(명)		
합계	활동보조	방문목욕	방문간호	계	남	여
160	138	16	6	16,999	2,559	14,440

※ 방문목욕 및 방문간호 제공기관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」 별표 1에 따른 시설 및 인력기준 적용 장기요양기관 중에서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

- 활동보조 제공기관 현황 : 138개소

합계	장애인단체	장애인복지관	IL센터	지역자활센터	기 타
138	16	29	53	17	23

※ 기타(21) : 장애인복지시설, 돌봄센터, 사회적 기업, 부모회, 도서관 등

- 활동보조인 교육기관 현황 : 10개소 (현황 : 붙임 5)

합계	마포구	광진구	성북구	은평구	서대문구	금천구	강서구	영등포구	서초구	도봉구
10	1	1	1	1	1	1	1	1	1	1

## □ 추진 실적

- **2018년 : 총 16,946명(시비 2,268명 포함), 221,292백만원**
  - 국고보조사업 : 189,330백만원(국비 50% : 시비 36% : 구비 14%)
  - 시비추가사업 : 31,962백만원 (시비100%)
  - ※ 방문목욕 154명, 방문간호 24명, 주간활동 122명 포함

## □ 주요성과

- **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 확대 : 100명→200명('18.10월)**
  -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인 외상 또는 사지마비 독거장애인의 안전확보를 위한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
- **야간순회방문서비스 대상자 확대 : 49명('17년) → 59명('18.12월)**
  - 지원대상 : 최중증 독거 및 준독거 장애인
  - 순회돌보미가 22시~익일 06시 사이 2~3회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소변처리, 건강상태 체크, 체위변경, 응급상황확인 등 서비스 제공
- **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 : 9개소 → 10개소**
  - 지정기관 :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(대표 황백남)
  - 지정일 : 2018.10.1.
- **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사업 추진(보건복지부)**
  - '19.2월말까지 시범사업 종료(서초,구로,강동)
  - 보건복지부 방침 확정 시 본격 사업 추진('19년 4월)

## □ 향후계획

- 전자바우처시스템 고도화 : 구추가 지원사업 확대 적용(연내 수시)
-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: '19.3월
-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정기 및 수시 지도·점검
  - 정기점검 : 보건복지부, 자치구, 사회보장정보원 합동점검
  - 수시점검 : 자치구, 국민연금관리공단 협의 자체점검 실시
  - 수시확인조사 : 바우처 클린신고 및 부당지급 급여 수시확인

절 차	내 용
서비스 신청	· 주소지의 읍·면·동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
방문조사	· 등급심사를 받지 않은 장애인은 장애등급심사 실시 (국민연금공단 - 장애심사센터) · 신체·정신 상태 및 활동지원이 필요한 정도 등을 조사 (국민연금공단 - 각 지사의 장애인 지원센터)
수급자격 심의	· 시·군·구에 설치된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수급자격 인정여부 및 활동지원등급 결정
결정·통지	· 신청자에게 수급자격, 등급결정결과, 지역 내 제공기관 현황 등 통지(시·군·구)
바우처 카드 발급	·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수급자에게 바우처 카드 발급 송부
본인부담금 납부	· 수급자가 금융기관 지정계좌에 입금
제공기관 선택	· 수급자가 활동지원기관 선택
급여제공(이용) 계획 수립	· 활동지원기관에서 방문상담 실시 (급여제공(이용) 계획서 및 제공기관과 이용자간 계약서)
급여제공 실시	· 급여제공계획에 의해 지정된 날짜에 방문, 서비스 제공 · 급여 제공 후 단말기 결제
사후 관리	· 사후관리(국민연금공단)